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6고정186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재영(기소), 최이슬(공판)
판 결 선 고 2026. 5.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07. 11. 21:53경 안산시 단원구 B, 2층에 있는 'C' 라이브 카페에서, 사단법인 D의 관리 저작물인 'E'(작사 : F, 작곡 : G) 곡을 사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재생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음악의 저작재산권을 침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단법인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나, 고소인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저작권료의 납부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정만을 내세우며 일방적으로 이를 거절한 점,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지웅 _____